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0.12.20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1월 15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22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0.12.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안동수)

가. 제안이유

- 근거법률의 개정과 법률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용어를 개정하고 현행 제조업에 국한 되어 있는 기금의 용자대상을 타 업종 및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영등포구 경기 부양을 이루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문 수정
(안 제1조~안 제2조의2, 안 제4조, 안 제9조)
- 소상공인, 지식산업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
(안 제2조의2제2호, 안 제2조의2제8호~9호)
- 기금의 용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조문 신설(안 제7조제2항)
- 지원된 용자금 회수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수정 및 신설
(안 제2조의2제4호~제2조의2제5호, 안 제2조의2제7호~안 제2조의2제9호)
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 현 영)

-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용자금의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내용과 근거 법령 조항개정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의 정비 등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임
- 종합적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운영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범위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이번에 상정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지원내용이 나누어져 있어 실시 초기에 다소 혼선이 있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또한 기금의 용자 등 직접적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점포(SSM)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조정제 실시,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 인근에 공유주차장 설치와 같은 제도적·환경적 간접 지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고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3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근거법률의 개정과 법률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용어를 개정하고 현행 제조업에 국한 되어 있는 기금의 용자대상을 타 업종 및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영등포구 경기부양을 이루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근거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 (안 제1조, 안 제2조의 2)

나. 법률용어의 순화로 인한 개정 (안 제2조의2 ~ 안 제6조)

다.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자대상 확대에 관한 개정

(안 제1조 ~ 제2조의2, 안 제4조, 안 제7조, 안 제9조)

라.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개정 (안 제6조)

마. 중소기업육성기금 회수 규정 강화에 대한 개정 (안 제 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
「중소기업기본법」,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
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예산부서와 별도 협의 필요

다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입법예고(2010.9.30~10.20) 결과 : 의견 없음

2)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33조”를 “제142조”로 하고 “중소기업의”를 “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중소기업의”를 “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”로 한다.

제2조의2 중 제7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제2호와 제8호,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
8. “지식산업”이란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2항을 말한다.
9. “정보통신산업”이란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3항을 말한다.

제2조의2 중 “용어는”을 “용어의”로, 제1호의 “중소기업자라 함은”을 “중소기업자란”으로, 제3호의 “ “중소기업운전자금”(이하 “운전자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중소기업의”를 “ “운전자금”이란”으로 하고, “시설투자이외의”를 “시설

투자 이외의”로 한다.

제4호의 “ “중소기업시설자금”(이하 “시설자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”을 “ “시설자금”이란”으로 하고 “아파트형공장건설”을 “지식산업센터건설”로 하며, “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”을 “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”이라 한다.

제5호의 “ 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”(이하 “창업투자회사”라 한다)라 함은”을 “ 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”(이하 “창업투자회사”라 한다)란”으로 하고 “제11조제1항”을 “제10조제1항”이라고 한다.

제6호의 “ “기술개발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”를 “ “기술개발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며 가목의 “중소기업자가”를 “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”로 한다.

제7호의 “ “창업”이라 함은”을 “ “창업” 이란”으로 하고 “제3조”를 “제2조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을 “기금의조성”에서 “기금의 조성”으로 하고, 본문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한다.

제4조 중 제1항의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, 같은 항 제1호의 “중소기업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”을 “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, 시설자금”으로,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중소기업”을 “중소기업 및 소상공인”으로 하고 제4호의 “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”를 “창업지원센터 입주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의 “중소기업”을 “중소기업 및 소상공인”으로 “목적외”를 “목적외”로 한다.

제5조 중 제2항의 “기업지원담당주사로”를 “기업지원팀장으로”로 한다.

제6조 중 제1항의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, 같은 조 제2항의 “부구청장”을 “재정국장”으로, “재정경제국장이 되고”를 “위원 중 선출하고”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“기업지원담당주사가”를 “기업지원팀장이”로, 제4항의 “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”를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7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

제9조 제1항 중 “중소기업자”를 “중소기업 및 소상공인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“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용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”를 “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”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, 제2호,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기금의 용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
2. 휴·폐업 하였을 경우
3. 영등포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제133조와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<u>중소기업의</u>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제142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기금의 설치) <u>중소기업의</u>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·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설치) <u>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의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“중소기업자”라 함은</u> 「중소기업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<u>〈신 설〉</u></p> <p>2. <u>“중소기업운전자금”(이하 “운전자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중소기업의</u>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<u>시설투자이외의</u>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.</p>	<p>제2조의2(정의) ----- 용어의 ----- 1. <u>“중소기업자”란</u>----- ----- ----- 2. <u>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</u> ----- 3. <u>“운전자금”이란</u> ----- ----- <u>시설투자 이외의</u> ----- ----- -----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3. "중소기업시설자금"(이하 "시설자금"이라 한다)이라 함은 자동화·정보화·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<u>아파트형공장건설·시장재개발·시장시설개선·공동창고설치·점포시설개선·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</u>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.</p>	<p>4. "시설자금"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식산업센터건설</u> ----- ----- <u>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4. "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"(이하 "창업투자회사"라 한다)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<u>제11조제1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.</p>	<p>5. "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"(이하 "창업투자회사"라 한다)란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0조제1항</u> ----- -----</p>
<p>5. "기술개발"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. 가. <u>중소기업자가</u> 생산·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나.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</p>	<p>6. "기술개발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----- 가. <u>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</u> ----- ----- ----- 나. ----- -----</p>
<p>6. "창업"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<u>제3조</u>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7. "창업"이란 ----- ----- ----- <u>제2조</u> ----- -----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7. “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”이라 함은 제조업지원과 관련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업, 연구 및 개발업,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업, 엔지니어링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<삭 제></p> <p>8. “지식산업”이란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2항을 말한다.</p> <p>9. “정보통신산업”이란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3항을 말한다.</p>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~2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----- 각 호의 -----</p> <p>1~2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기금의 용도)</p> <p>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p>1. 중소기업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</p> <p>2.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</p> <p>3.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(중소·벤처기업지원센터 등)</p> <p>4.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</p> <p>①----- 각 호의 -----</p> <p>1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, 시설자금 및-----</p> <p>2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-----</p> <p>3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-----</p> <p>4. 창업지원센터 입주자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-----</p> <p>---목적 외-----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<u>기업지원담당주사</u>로 한다.</p> <p>③~⑤ (생략)</p>	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<u>기업지원팀장으로</u> ----- -----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</p> <p>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~7 (생략)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<u>부구청장</u>이 되며, 부위원장은 <u>재정경제국장</u>이 되고, 위원은 관련과장 및 담당 상임위 구의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</p> <p>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<u>기업지원담당주사</u>가 된다.</p> <p>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</p> <p>①----- 각 호 의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~7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<u>재정국장</u>----- <u>위원 중</u> <u>선출하고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----- ----- <u>기업지원팀장이</u> ----- -----</p> <p>④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 -----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)</p> <p>①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「<u>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</u>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<p>제9조(용자금의 사용 등)</p> <p>① 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<u>중소기업</u> 자에 대하여 용자금이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<u>중소기업</u> 자가 <u>기금의 용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</u> 대출의 해지 또는 기금의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9조(용자금의 사용 등)</p> <p>① ----- <u>중소기업 및 소상공인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 <u>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<u>기금의 용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 4조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</u></p> <p>2. <u>휴·폐업 하였을 경우</u></p> <p>3. <u>영등포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</u></p>